

의료감시 업무규정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의료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감시원의 직무범위와 감시요령, 감시업무한계 및 감시보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시업무의 확실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범위) 의료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.
- 2. 혈액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.
- 3. 기타 보건사회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의료감시업무.

제3조 (감시구역) 의료감시원의 감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보건사회부소속 의료감시원은 전국일원으로 한다.
- 2. 서울특별시, 부산시 또는 도 소속의료감시원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.

제4조 (감시구분) ① 의료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.

② 정기감시는 연 2회 행하고 수시감시는 소속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5조 (감시대상) 의료감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법에 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, 시술소 또는 연구소등.
- 2.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한 혈액원.
- 3. 의료기사법에 의한 치과기공소.
- 4. 기타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대한 위법의료행위등

제6조 (감시요령) ① 의료감시원이 아니면 의료감시를 행할 수 없다.

② 의료감시는 공무원 근무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의료감시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감시원증을 제시하고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.

④ 의료감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
- 1. 의료기관등의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유무.
- 2. 의료기관등의 휴업, 폐업, 이전, 재개업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.
- 3. 의료기관등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,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소지 여부.
- 4.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이행 여부.
- 5. 적출물등의 적법처리 여부.
- 6. 진료, 조산, 간호기록부등의 비치 및 기록관리 또는 보존기간등의 준수 여부.
- 7.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.
- 8.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적법관리 여부.
- 9. 의료기관등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.
- 10.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숙직의료인의 적정배치 여부.
- 11. 의료기관등의 명칭 또는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적법표시 여부.
- 12. 의료기관 관리의사의 의료업무의 적법수행 여부.
- 13.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광고행위.
- 14. 비도덕적 의료행위.

15. 한지의료인의 지역이탈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업무한계의 준수 여부
16. 의료유사업자, 안마사의 시설시설의 적정관리 여부
17. 혈액원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
18. 혈액원업무관리(채혈, 수혈)의 적정여부.
19. 기타 의료관계법령 위반사항.

제 7 조 (감시기록부) 의료감시원은 의료감시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직무 집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감시결과보고) 의료감시원이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감시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장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내에서 행한 의료감시업무의 결과를 매분기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영은 1977.8.1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령) 보건사회부훈령 제186호 의료감시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1977.8.1부터 이를 폐지한다.

보건사회부 훈령 제241호

1977. 7. 1

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

제 1 조 (목적) 이 영은 의료법, 혈액관리법 및 기타 의료에 관계되는 법령(이하 “의료관계 법령”이라 한다) 위반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① 보건사회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인, 의료기사와 의료기관, 혈액원 또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

② 의료인,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의 취소와 자격정지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행한다.

제 3 조 (경고처분등) 의료인, 의료기사와 의료기관, 혈액원 또는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또는 시정지시할 수 있다.

1.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, 비치, 보관하지 아니한 때
2. 의료법 제30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
3.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및 의료인등의 정원을 위반하거나 혈액관리법, 제 4 조 제 3 항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또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2 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4. 의료법 제33조 또는 혈액관리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
5. 의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숙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때
6.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 명칭표시를 위반한 때
7.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
8.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관리의사가 그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때
9. 의료법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10. 의료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가 있는 때
11.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12.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
13. 혈액관리법 제 7 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상액을 지급한 때
14. 정당한 이유없이 혈액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의 공급을 기피한 때
15. 혈액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, 비치, 보관하지 아니한 때
16. 의료기사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 손상행위 또는 광고행위를 한 때
17. 보건사회부장관이 업무감독상 필요하여 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18. 제 4 조 내지 제 7 조의 규정 이외의 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한 때

제 4 조 (1월의 업무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.

1. 제 3 조 제 3 호 내지 제 9 호, 제 11 호 내지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제 3 조 제 3 호 내지 제 9 호 또는 제 11 호 내지 제 15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
2. 제 3 조 제 3 호 내지 제 9 호, 제 11 호 내지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시에 3건이상 지적된 때
3. 의료기관에 소속된 조산원, 간호원, 의료기사 또는 간호보조원이 그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. 다만, 경미한 경우에 한한다.
4.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감시원의 직무집행(임검)을 거부, 기피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

제 5 조 (2월 또는 3월의 업무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또는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.

1.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은 받은후 2년내에 다시 제 4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을 기피하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때
3. 의료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 4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잉진료행위 또는 과다진료비를 요구한 때
4.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
5. 혈액관리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6. 혈액관리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

제 6 조 (4월 내지 6월의 업무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월 내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.

1.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 2년내에 다시 제 5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
2.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
3.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광고를 한 때
4.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또는 제11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혈, 수혈을 함으로써 인체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

제7조 (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또는 혈액원을 폐쇄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당해 의료기관 또는 혈액원의 규칙으로 인하여 소속 의료인이 임의로 이를 시정할 수 없을 때
2.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내에 다시 제 6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3.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
4.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때
5.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혈액원의 업무를 행한 때

제8조 (1월 내지 3월의 자격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내지 3월 자격정지처분을 한다.

1.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제 3 조 제 1 호·제 2 호·제10호 또는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제 3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10호 또는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3회이상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
제9조 (4월 내지 6월의 자격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월 내지 6월의 자격 정지처분을 한다.

1.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2년내에 다시 제 8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허위진단서를 발행하거나 각종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때
3. 4회이상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4. 제 8 조의 해당하는 사항이 그 정도가 심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

제10조 (7월 내지 1년의 자격정지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내지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다.

1.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2년내에 다시 제 9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면허된 이외분야의 의료행위를 한 때
3.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한 때
4. 5회이상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5.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미만의 집행유예를 받은 때
6.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타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때

제11조 (면허의 취소처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.

1. 의료법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
2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
3.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

4.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한 때
5. 한치의사, 한지치과의사, 한지한의사가 의료법 제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지역밖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그 지역을 장기간 무단이탈한 때
6. 3년내에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
7. 면허증을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한 때

제12조 (폐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조치) 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자는 즉시 그 처분사항을 다른 폐쇄 또는 업무정지처분권자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 (행정처분의 조정)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을 조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제14조 (준용) 서울특별시장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간호보조원,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1977.8.1.부터 시행한다.

□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□



대 표 양 해 수

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4의 2 (청량리 역앞)

전화 (966) 1 1 1 0